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27
----------	-------

발의연월일 : 2026. 10. 7.

발 의 자 : 서영석 · 임호선 · 윤준병
박용갑 · 윤후덕 · 문대림
김주영 · 노종면 · 김태년
윤종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9세 미만 아동이라도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장애아동에 포함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지연아동은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가 예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아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방식으로만 지원되고 있고, 발달지연의 기준과 평가·재평가 및 지원 종결 후 연계 절차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의 공백과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지연아동을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정의하되 현행 장애아동 지원대상은 그대로 유지하여 지원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부터 평가, 조기개입, 재평가, 지원의 조정·종결 및 교육·보육·의료·복지서비스로의 연계까지 체계

적으로 지원하며, 발달지연아동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9세 미만의 아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영역에서 유의한 지연이 확인되어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장애아동은 제외함)을 “발달지연아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조기개입, 재평가 및 필요한 지원으로의 연계·전환 대책을 포함하고,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지연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3호, 제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3 신설).
-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의 대상에 발달지연아동을 포함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대기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
- 라. 장애의 조기발견 대상에 발달지연아동을 포함하고,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평가, 조기개입, 주기적 재평가, 지원의 조정·종결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 지원체계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 마.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발달지연아동을 포함하고, 발달지연아

동의 지원기간과 장애아동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연속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신청·선정 등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을 발달지연아동에 계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1조의3 신설 및 제33조제1항제3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발달지연아동”이란 9세 미만의 아동 중 인지, 언어·의사소통, 감각·운동, 적응행동, 사회성 등 하나 이상의 발달영역에서 연령에 따른 발달수준보다 유의한 지연이 확인되어 조기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은 제외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조기개입과 발달상태의 재평가 및 필요한 지원으로의 연계·전환을 위한 대책의 강구

제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발달지연아동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장애아동과 발달지연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대기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분석

제9조제1항제1호 중 “장애의 조기발견”을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2조의2에 따른 발달지연아동의 평가·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담,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제11조제1항 중 “그”를 “발달지연아동과 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발달지연아동의 규모와 발달지연의
유형·정도, 장애아동 및 발달지연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대
기 현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제공인력 및 비용부담 현황, 재
평가 및 교육·보육·의료·복지서비스와의 연계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발달재활서비
스 지원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장애의 조기발견)”을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
견)”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의 유무를”을 “장애 또는 발달
지연을”로, “장애가”를 “장애 또는 발달지연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의 조기발견”을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중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을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
기발견과 조기개입의 필요성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장
애로”를 “발달지연이 확인된 영유아 또는 장애로”로, “장애의 예방·
치료”를 “장애 또는 발달지연의 예방·치료 및 조기개입”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발달지연아동의 조기개입 및 지원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발달지연아동에 대하여 발달상태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평

가, 조기개입, 주기적인 재평가 및 필요한 서비스와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상태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평가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의의 진단·검사 결과 등에 따른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지연아동의 발달상태와 지원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 발달지연아동의 발달수준이 연령에 따른 발달수준에 도달하는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보호자에게 재평가 결과와 종결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지원을 종결하거나 아동이 9세가 되어 발달지연아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아동에게 교육·보육·의료 또는 그 밖의 복지지원이 필요하면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야 하며,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진단 및 등록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지연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라 장애아

동으로 인정된 경우 그 아동이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평가, 조기개입, 재평가, 지원의 조정·종결 및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장애아동”을 “장애아동 및 발달지연아동(이하 “장애아동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를 “장애아동등의 장애유형·장애정도 또는 발달지연의 유형·정도, 연령, 조기개입의 시급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 본문 중 “장애아동”을 각각 “장애아동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2. 발달지연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이 종결되는 달 또는 만 9세가 되는 달 중 먼저 도래하는 달까지. 다만, 해당 발달지연아동이 지원기간 중 장애아동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절차 등)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5호,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장애아동은 발달지연아동으로, 복지지원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으로 본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장애아동”을 “장애아동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아동으로 인정된 아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라 장애아동으로 인정되어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제2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장애아동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발달지연아동”이란 9세 미만의 아동 중 인지, 언어·의사소통, 감각·운동, 적응 행동, 사회성 등 하나 이상의 발달영역에서 연령에 따른 발달수준보다 유의한 지연이 확인되어 조기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장애 아동은 제외한다.</u>
5. (생 략)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u>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u>	5. (현행과 같음)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조기개입과 발달상태의</u>

	<u>재평가 및 필요한 지원으로 의 연계·전환을 위한 대책 의 강구</u>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 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4의2. 발달지연아동 지원 프로 그램의 개발 및 장애아동과 발달지연아동의 발달재활서 비스 이용·대기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분석</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 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 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 ----- ----- ----- ----- ----- ----- -----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1의2. (생략)

<신설>

2. ~ 6. (생략)

② ~ ⑤ (생략)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1.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2조의2에 따른 발달지연아동의 평가·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담,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 -----
--- 발달지연아동과 그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발달지연아동의 규모와 발달지연의 유형·정도, 장애아동 및 발달지연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대기 현황,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제공인력 및
비용부담 현황, 재평가 및 교
육·보육·의료·복지서비스와
의 연계 현황 등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하며, 보건복지
부장관은 그 결과를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시책에 반영하여
야 한다.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
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
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
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
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
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
할 수 있고,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
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
·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제12조(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
발견) ① -----

--- 장애 또는 발달지연을 --

----- 장애 또는 발달
지연이 -----

② -----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 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생략)

<신설>

-----.

③ -----
-----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

④ (현행과 같음)

⑤ -----

발달지연이 확인된 영유아 또는 장애로 -----

----- 장애 또는 발달지연의 예방·치료 및 조기개입 -----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발달지연아동의 조기개입 및 지원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지연아동에 대하여 발달상태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평가, 조기개입, 주기적인 재평가 및 필요한 서비스와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상태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평가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의의 진단·검사 결과 등에 따른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지연아동의 발달상태와 지원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 발달지연아동의 발달수준이 연령에 따른 발달수준에 도달하는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보호자에게 재평가 결과와 종결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

항에 따라 지원을 종결하거나 아동이 9세가 되어 발달지연아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아동에게 교육·보육·의료 또는 그 밖의 복지지원이 필요하면 제10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야 하며,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진단 및 등록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지연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라 장애아동으로 인정된 경우 그 아동이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평가, 조기개입, 재평가, 지원의 조정·종결 및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 장애아동 및

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발달지연아동(이하 “장애아동등”이라 한다)-----

-----.

② -----
----- 장애아동등의 장애유형·장애정도 또는 발달지연의 유형·정도, 연령, 조기개입의 시급성과 -----

-----.

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2. 발달지연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

④ (생 략)

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7

의 다음 달부터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이 종결되는 달 또는 만 9세가 되는 달 중 먼저 도래하는 달까지. 다만, 해당 발달지연아동이 지원기간 중 장애아동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장애아동 등-----

-----.

⑥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장애아동 등-----

조의2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종사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 ⑩ (생략)

<신설>

제33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의 명칭, 발급기관, 취득요건과 경력 등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다음

-----.

-----.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절차 등)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5호,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장애아동은 발달지연아동으로, 복지지원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으로 본다.

제33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① -----

각 호의 대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고 자 하는 <u>장애아동</u> 및 그 보호자 ② ~ ⑤ (생 략)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장애아동등</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